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451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9.

발 의 자 : 김예지 • 구자근 • 권명호

김선교 • 류성걸 • 송석준

이명수 · 이채익 · 최형두

추경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·시행 하도록 하여 공연예술인 육성, 공연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, 장애인의 공연 문화 향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 지 않고 있음.

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'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'에 따르면,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에 있어 '발표·전시·공연 시설의 부족'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혔고, 관람 시 편의시설·보조도구 등 접근성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는 등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보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

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항제1호의2·제3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

3의2. 장애인의 공연시설 접근권 및 공연 문화향유권 보장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

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)	제3조(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	②
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	
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	
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	
하며,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	
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	
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	
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	
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	
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의2.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
	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
2. ·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의2. 장애인의 공연시설 접근
	권 및 공연 문화향유권 보장
	에 관한 사항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